진도군 공고 제2026-845호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 및 제24회, 제26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진도군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붙임 1.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목록 1부.
2.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문 각 1부.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목록

연번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1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획홍보실
2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3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총 무 과
4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민원봉사과
5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해양항만과
6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양항만과
7	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가족행복과
8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 광 과
9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스포츠산업사 업 소
10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홍보실

연번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11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총 무 과
12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총 무 과
13	진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규정	가족행복과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조례 제2841호

붙임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1호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1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수행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 기능은 제7조에 따른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생 략)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6.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8조----------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삭 제>
② ~ ④ (생 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	<삭 제>

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 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	제11조(회계공무원) ① ---------- ---------- ----------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홍보실장 2. (생 략) ② (생 략) 제9조 ~ 제11조 (생 략)	---. 1.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조례 제2842호

붙임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2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6명”을 “669명”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1명”을 “654명”으로 한다.

제4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51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69명이며---------- ---. 1. ---------- 65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비 고
총 계	669	-					
정무직 계	1	-					
군 수	1	1	-	-	-	-	-
일반직 계	627	-					
3급	1	1	-	-	-	-	-
4급	1	-	-	1	-	-	-
4~5급	3	2	-	-	-	1	-
5급	33	16	2	5	4	6	-
6급이하 계	589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1	-					
연구직 계	10	-					
연구사	10	-					
지도직 계	27	-	-	27	-	-	-
지도관	2	-	-	2	-	-	-
지도사	25	-	-	25	-	-	-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곽 

진도군 조례 제2843호

붙임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3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될 때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및 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1회
2. 10년 이상 20년 미만: 2회 이내
3. 20년 이상 30년 미만: 4회 이내
4. 30년 이상: 6회 이내

⑤ 군수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은 진도군 최초 신규 임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분할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감염병 진단 확정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복구업무 등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⑩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특별휴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6일 기준으로 해당 재직기간에 부여된 장기재직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그 미사용 일수를 이월할 수 있다.

[별표 1]

선서문 [제2조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진도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진도군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자(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조사 항목은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음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조례 제2844호

붙임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4호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그 밖에 공공부문 해당시설 등”을 “그 밖에”로 한다.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보도 포함)

나. 가로등, 보안등(LED)

다. 옹벽, 담장, 옥상, 외벽 및 조경시설 등 공용부분

라. 소방 및 방범시설(CCTV,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

마. 노후 승강기

바.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복리시설

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나. 주민 쉼터, 벤치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다.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한다.

1. 10세대 이하 :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2. 10세대 초과 5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3. 5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제4조제2항 본문 중 “경우 동일 공정의 사업에 대하여”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비용 지원) ① (생 략)	제3조(관리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단지 내 도로, 인도, 하수도, 보안 등의 유지보수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 포함) 나. 가로등, 보안등(LED) 다. 옹벽, 담장, 옥상, 외벽 및 조경시설 등 공용부분 라. 소방 및 방범시설(CCTV,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 마. 노후 승강기 바.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쓰레기보관시설 등의 유지보수	2. 복리시설 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나. 주민 쉼터, 벤치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다.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삭 제>
4. 장애인 편의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삭 제>
5.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삭 제>
6. 공동주택 외벽 도색보수	<삭 제>
7. 그 밖에 공공부문 해당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 군수---------- ----------
제4조(지원금액)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한다. 1. 10세대 이하 :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2. 10세대 초과 5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3. 5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일 공정의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경우 ---------- ---------- --. 다만,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조례 제2848호

붙임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8호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진도항 배후지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사업비”란 진도항 배후지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비와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비를 말한다.
3. “원형지”란 진도항 배후지 중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성된 상태에서, 입주자가 해당 토지의 계획·설계·시공 등 개발·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도항 배후지로 조성하는 단지(이하 “진도항 배후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진도항 배후지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항 배후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기본계획

2. 분양가격 및 분양계획

3.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절차

4. 원형지 공급 대상의 선정, 공모계획(공모지침 포함), 평가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진도항 배후지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분양

제12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 상업시설 및 산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입주자격) 진도항 배후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해당 진도항 배후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진도항 배후지 분양을 위한 예정가격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조성사업비(조성원가 등을 포함한다)를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기초가격으로 한다.

③ 진도항 배후지의 확정 분양가격은 일반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가격으로 한다.

제15조(분양절차) ① 군수는 진도항 배후지의 분양(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양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진도항 배후지의 체계적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형지를 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의 절차, 평가기준, 제출서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공모지침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모지침의 제정·변경 및 공모의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원형지의 처분가격(예정가격)은 제14조에 따라 산정하며, 공모 및 계약의 방식·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군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지침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등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분양계약) ① 군수는 낙찰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분양계약에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군수는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3. 조례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분양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18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제16조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반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납입기한 및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기한, 분할 횟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분양계약에서 정한다.

② 분양대금은 전액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제19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배후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6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타 법령의 준용) 진도항 배후지의 조성·관리 및 분양에 관하여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원칙을 준용하며,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특별회계와의 관계)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을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설치, 존속기한, 세입·세출, 회계관계공무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조례 제2849호

붙임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9호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양수입금 등 관련 재원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분양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2. “특별회계”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
3. “분양대금”이란 분양조례에 따른 분양지 분양대금을 말한다.
4. “입주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이란 분양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분양수입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회계를 계속 설치·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대금

2. 입주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

3. 분양용지 선수금 및 계약보증금 중 귀속되는 금액

4.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5. 그 밖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비

4. 조성사업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5. 분양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특별회계의 예산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한다.

② 특별회계는 조성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연도별 세입·세출 및 자금수지 전망

2.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보상비·공사비·분양관리비 등)

3. 분양 지연·미분양 등 세입 변동에 따른 대응계획

4. 여유자금 운용계획 및 안전성 확보방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군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산 및 정산) ① 특별회계의 결산은 관계 법령 및 진도군 결산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분양조례에 따른 입주자부담금의 정산금은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세출로 처리한다.

제10조(여유자금의 운용)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과 유동성을 우선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출납 및 회계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12조(회계 종료 시 잔액 처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 또는 사업 종료 시 잔액의 처리, 채권·채무의 정리 및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계 곡 

진도군 조례 제2845호

붙임 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5호

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

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2. 해당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수량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조례 제2846호

붙임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6호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진도아리랑 축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재난 및 안전분야 전문가

3.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및 진도아리랑 축제 등(이하 "축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 ---------- ---------- ---------- ----------.
제3조(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위촉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은 축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2.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재난 및 안전분야 전문가
<신 설>	3.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 ------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추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 포 문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곤

진도군 조례 제2847호

붙임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진도군 조례 제2847호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존속기한) ----------2031년 12월 31일----------.

공 포 문

2026년 제24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2026. 8. 19.)에서 의결된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규칙 제1350호

붙임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진도군 조례 제1350호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① (생 략)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제1항 및 제2항----------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 포 문

2026년 제26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2026. 8. 26.)에서 의결된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곤 

진도군 규칙 제1349호

붙임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진도군 규칙 제1349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개정 2026. 9. 30.>

직급별 \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69	345	15	113	45	26	125
일반직		627	337	15	81	43	26	125
전문경력관		3	2		1			
연구직		10	4		4	2		
지도직		27			27			
별정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계		627	337	15	81	43	26	125
3급	소 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 계	1			1			
	서기관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4-5급	소 계	3	2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시설사무관	1	1					
5급	소 계	33	16	2	5	4		6
	행정	1	1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5	5					

	행정·별정							
	농업·수의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농업·농촌지도·생활지도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환경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간호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별정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6급	소 계	179	92	5	27	13	6	36

	행정	3	3					
	세무	1	1					
	사회복지	3	1					2
	공업							
	농업	1			1			
	수의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항해)	4	1					3
	해양수산(기관)	1	1					
	보건							
	간호							
	시설	3	3					
	시설관리							
	운전	5	2	1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공업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10	**10**					
	행정·방송통신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의료기술							
	공업·시설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녹지	2	2					
	농업·수의	1	1					
	농업·운전	1	1					
	농업·농업연구	1				1		
	농업·농촌지도							
	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약무							
	보건·간호							
	간호·보건진료	9			9			
	환경·해양수산							
	시설·방송통신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4	4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3	1			2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토목운영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녹지·환경	2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토목운영							
	행정·시설·농촌지도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수의·농업연구							
	농업·보건·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10			10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2
	행정·세무·전산·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수의	1	1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3	2					1
	행정·세무·농업·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사무운영							
	행정·전산·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1						1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3					1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9	5					4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농업·시설	2						2
	행정·공업·농업·토목운영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8	1			6	1	
	행정·공업·시설·운전	2	2					
	행정·공업·시설·시설관리							
	행정·공업·시설·사무운영							
	행정·공업·방송통신·시설관리							
	행정·공업·방송통신·사무운영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5	1			3		1
	행정·농업·수의·수의연구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5	2				1	2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환경·사무운영	1						1
	행정·농업·시설·토목운영	1						1
	행정·농업·시설·전문경력관							
	행정·농업·시설관리·사무운영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3					1	2
	보건·의료기술·간호·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운전							
7 급	소 계	193	123	4	22	10	8	26
	행정	13	13					
	세무							
	전산	1	1					
	사회복지	8	5				1	2
	공업	1	1					
	농업							
	녹지	1	1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2						2
	해양수산(기관)	2						2
	보건							
	의료기술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8	1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운전	5	3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13	12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7	5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6	1		2			3
	행정·해양수산	6	4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시설관리							
	행정·전화상담							
	행정·사무운영							
	전산·해양수산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간호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2	2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4	3		1			
	농업·운전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1	1					
	녹지·방재안전	1	1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약무							

	보건·간호	7	2		2		1	2
	의료기술·간호	1			1			
	간호·방재안전	1	1					
	환경·시설							
	환경·운전	1					1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2	2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전산·사서	1	1					
	행정·전산·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7	1	1		3		2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농업·지도사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1		2			
	공업·환경·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보건·간호·보건진료	5			5			
	행정·전산·보건·환경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5		1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3	3					
	행정·공업·시설·농업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2				2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3				2		1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4	4					
8 급	소 계	153	68	3	24	11	10	37
	행정	5	5					
	세무							

	전산							
	사회복지	13	3				2	8
	사서							
	공업	2	2					
	농업	2			1			1
	녹지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항해)	1	1					
	해양수산(기관)	3						3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3	3					
	시설	10	10					
	방재안전	3	3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3	2		1			
	행정·세무	6	6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0	2		1		2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운전							
	행정·사무운영							
	세무·운전	1	1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방송통신	2				2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전산							
	농업·녹지							
	농업·농촌지도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녹지·방재안전	1	1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간호	8			4			4
	의료기술·시설							
	간호·보건진료	2			2			
	환경·운전	5	2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해양수산	6	2			3		1
	행정·농업·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녹지·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2			12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7					1	6
	행정·농업·녹지·시설	4				3		1
	행정·농업·해양수산·녹지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5					1	4
9 급	소 계	64	35	1	2	5	1	20
	행정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10	1					9

	공업							
	농업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항해)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7	7					
	방재안전	1	1					
	운전	1	1					
	토목운영	1	1					
	기계운영	2	2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행정·시설	2	2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해양수산							
	공업·시설	3	3					
	농업·녹지							
	농업·수의							
	보건·의료기술	2			2			
	간호·보건진료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8		1		1	1	5
전문경력관계		3	2		1			
나 군	소 계	3	2		1			
	농기계교육교관	1			1			
	홍보관리원	1	1					
	투자유치관리원	1	1					
연 구 직 계		10	4		4	2		
연구관	소 계							
	농업연구관							
연구사	소 계	10	4		4	2		
	학예연구사	2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5			4	1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지 도 직 계		27			27			
지도관	소 계	2			2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별 정 직 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정 무 직 계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발 령 문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각

진도군 훈령 제505호

붙임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진도군 훈령 제505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개정 2026. 9 . 30.>

직급별 \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69	345	15	113	45	26	125
일 반 직		627	337	15	81	43	26	125
전 문 경 력 관		3	2		1			
연 구 직		10	4		4	2		
지 도 직		27			27			
별 정 직		1	1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627	337	15	81	43	26	125
3급	소 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 계	1			1			
	서기관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4-5급	소 계	3	2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시설사무관	1	1					
5급	소 계	33	16	2	5	4		6
	행정	1	1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5	5					
	행정·별정							
	농업·수의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농업·농촌지도·생활지도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환경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간호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별정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6급	소 계	179	92	5	27	13	6	36
	행정	3	3					
	세무	1	1					
	사회복지	3	1					2
	공업							
	농업	1			1			
	수의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항해)	4	1					3

	해양수산(기관)	1	1					
	보건							
	간호							
	시설	3	3					
	시설관리							
	운전	5	2	1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공업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10	10					
	행정·방송통신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의료기술							
	공업·시설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녹지	2	2					
	농업·수의	1	1					
	농업·운전	1	1					
	농업·농업연구	1				1		
	농업·농촌지도							
	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약무							
	보건·간호							
	간호·보건진료	9			9			
	환경·해양수산							
	시설·방송통신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4	4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3	1			2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토목운영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녹지·환경	2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토목운영							
	행정·시설·농촌지도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수의·농업연구							
	농업·보건·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10			10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2
	행정·세무·전산·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수의	1	1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3	2					1
	행정·세무·농업·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사무운영							

	행정·전산·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1						1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3					1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9	5					4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농업·시설	2						2
	행정·공업·농업·토목운영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8	1			6	1	
	행정·공업·시설·운전	2	2					
	행정·공업·시설·시설관리							
	행정·공업·시설·사무운영							
	행정·공업·방송통신·시설관리							
	행정·공업·방송통신·사무운영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5	1			3		1
	행정·농업·수의·수의연구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5	2				1	2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환경·사무운영	1						1
	행정·농업·시설·토목운영	1						1
	행정·농업·시설·전문경력관							
	행정·농업·시설관리·사무운영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3					1	2
	보건·의료기술·간호·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운전							
7 급	소 계	193	123	4	22	10	8	26
	행정	13	13					
	세무							
	전산	1	1					
	사회복지	8	5				1	2
	공업	1	1					
	농업							
	녹지	1	1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2						2
	해양수산(기관)	2						2
	보건							
	의료기술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8	1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운전	5	3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13	12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7	5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6	1		2			3
	행정·해양수산	6	4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시설관리							
	행정·전화상담							
	행정·사무운영							
	전산·해양수산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간호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2	2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4	3		1			
	농업·운전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1	1					
	녹지·방재안전	1	1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약무							
	보건·간호	7	2		2		1	2
	의료기술·간호	1			1			
	간호·방재안전	1	1					
	환경·시설							
	환경·운전	1					1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2	2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전산·사서	1	1					
	행정·전산·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7	1	1		3		2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농업·지도사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1		2			
	공업·환경·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보건·간호·보건진료	5			5			
	행정·전산·보건·환경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5		1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3	3					
	행정·공업·시설·농업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2				2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3				2		1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4	4					
8 급	소 계	153	68	3	24	11	10	37
	행정	5	5					
	세무							
	전산							
	사회복지	13	3				2	8
	사서							
	공업	2	2					
	농업	2			1			1
	녹지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항해)	1	1					
	해양수산(기관)	3						3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3	3					
	시설	10	10					
	방재안전	3	3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3	2		1			
	행정·세무	6	6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0	2		1		2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운전							
	행정·사무운영							
	세무·운전	1	1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방송통신	2				2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전산							
	농업·녹지							
	농업·농촌지도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녹지·방재안전	1	1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간호	8			4			4
	의료기술·시설							
	간호·보건진료	2			2			
	환경·운전	5	2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해양수산	6	2			3		1
	행정·농업·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녹지·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2			12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7					1	6
	행정·농업·녹지·시설	4				3		1
	행정·농업·해양수산·녹지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5					1	4
9 급	소 계	64	35	1	2	5	1	20
	행정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10	1					9
	공업							
	농업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항해)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7	7					
	방재안전	1	1					
	운전	1	1					
	토목운영	1	1					
	기계운영	2	2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행정·시설	2	2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해양수산							
	공업·시설	3	3					
	농업·녹지							
	농업·수의							
	보건·의료기술	2			2			
	간호·보건진료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8		1		1	1	5
전문경력관계		3	2		1			
나 군	소 계	3	2		1			
	농기계교육교관	1			1			
	홍보관리원	1	1					
	투자유치관리원	1	1					
연 구 직 계		10	4		4	2		
연구관	소 계							
	농업연구관							
연구사	소 계	10	4		4	2		
	학예연구사	2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5			4	1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지 도 직 계		27			27			
지도관	소 계	2			2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별 정 직 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정 무 직 계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진도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2] [본청]<개정 2026. 9 . 30.>

직급별 \ 기관별	직렬별	합계	기획 홍보실	인구 정책실	안전생활 지원과	총무과	세무 회계과	민원 봉사과	수산 지원과	진도개 축산과	해양 항만과	경제 에너지과	주민 복지과	가족 행복과	관광과	문화 예술과	건설과	도시 개발과	환경 수질과	산림 휴양과
총계		345	18	20	21	27	26	25	21	14	15	16	18	14	16	13	20	18	29	14
일반직		337	17	19	21	24	26	25	21	12	15	16	18	14	16	12	20	18	29	14
전문경력관		2	1	1																
연구직		4				1				2						1				
지도직																				
별정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337	17	19	21	24	26	25	21	12	15	16	18	14	16	12	20	18	29	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4-5급	소계	2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시설사무관	1		1																
5급	소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	1				1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5					1								1	1	1	1		
	행정·별정																			
	농업·수의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농업·농촌지도·생활지도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환경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간호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해양수산·시설·별정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6급	소 계	92	7	6	6	5	5	6	7	5	4	5	5	4	4	4	5	5	5	4
	행정	3	2			1														
	세무	1					1													
	사회복지	1											1							
	공업																			
	농업																			
	수의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항해)	1							1											
	해양수산(기관)	1							1											
	보건																			
	간호																			
	시설	3						1									1	1		
	시설관리																			
	운전	2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4	1			2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10					1	2							2		2	3		
	행정·방송통신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의료기술																			
	공업·시설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녹지	2																		2
	농업·수의	1								1										
	농업·운전	1								1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약무																			

	보건·간호																		
	간호·보건진료																		
	환경·해양수산																		
	시설·방송통신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4		2				1							1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토목운영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1		3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토목운영																		
	행정·시설·농촌지도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수의·농업연구																		
	농업·보건·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세무·전산·농업																		
	행정·세무·전산·녹지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수의	1								1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세무·농업·사무운영																		
	행정·전산·사회복지·간호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5											2	3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공업·농업·토목운영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운전	2			1		1													
	행정·공업·시설·시설관리																			
	행정·공업·시설·사무운영																			
	행정·공업·방송통신·시설관리																			
	행정·공업·방송통신·사무운영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수의연구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사무운영																			
	행정·농업·시설·토목운영																			
	행정·농업·시설·전문경력관																			
	행정·농업·시설관리·사무운영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의료기술·간호·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운전																			
7 급	소 계	123	6	8	6	14	13	8	7	4	5	7	7	6	4	4	6	4	8	6
	행정	13	4			5	1					2			1					
	세무																			
	전산	1				1														
	사회복지	5											2	3						
	공업	1																	1	
	농업																			
	녹지	1																		1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2																	2	
	시설	18						6			3				1		4	3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운전	3				1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12				3	9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5											3	2					
	행정·공업																		
	행정·농업	1								1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10	1	5							1						2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시설관리																		
	행정·전화상담																		
	행정·사무운영																		
	전산·해양수산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간호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2																2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3								3									
	농업·운전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1																	1
	녹지·방재안전	1																	1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약무																		
	보건·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간호·방재안전	1			1														
	환경·시설																		
	환경·운전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2					2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전산·사서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지도사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환경·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간호·보건진료																			
	행정·전산·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공업·환경·시설	3										3								
	행정·공업·시설·농업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4			4															
8 급	소 계	68	3	3	5	3	5	7	4	2	3	2	3	1	3	2	4	6	10	2
	행정	5	2			1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3											2	1						
	사서																			
	공업	2																	2	
	농업																			
	녹지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항해)	1							1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3																	3	
	시설	10					1	2			3						2	1	1	
	방재안전	3			2												1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2					1										1			
	행정·세무	6	1	1		2	2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9						3							1			5		
	행정·운전																			
	행정·사무운영																			
	세무·운전	1					1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전산																			
	농업·녹지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녹지·방재안전	1																		1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간호																			
	의료기술·시설																			
	간호·보건진료																			
	환경·운전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공업·시설·방재안전																			
	녹지·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녹지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9급	소 계	35		1	3		2	3	2		2	1	2	2	4	1	4	2	5	1
	행정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1											1							
	공업																			
	농업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항해)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7						2							2		2	1		
	방재안전	1			1															
	운전	1																	1	
	토목운영	1															1			
	기계운영	2																	2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2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해양수산																			
	공업·시설	3					2								1					
	농업·녹지																			
	농업·수의																			
	보건·의료기술																			
	간호·보건진료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전문경력관계		2	1	1																
나 군	소 계	2	1	1																
	농기계교육교관																			
	홍보관리원	1	1																	
	투자유치관리원	1		1																
연 구 직 계		4				1				2						1				
연구관	소 계																			
	농업연구관																			
연구사	소 계	4				1				2						1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지 도 직 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관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사																			
별 정 직 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정 무 직 계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진도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3] 〔의 회〕 <개정 2026. 9 . 30.>

직급별 \ 기관별	직렬별	합계	의회사무과
총계		15	15
일반직		15	15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계		15	15
3급	소계		
	부이사관		
4급	소계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4-5급	소계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시설사무관		
5급	소계	2	2
	행정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별정		
	농업·수의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농업·농촌지도·생활지도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환경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수의·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간호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보건·시설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해양수산·시설·별정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6급	소 계	5	5
	행정		
	세무		
	사회복지		
	공업		
	농업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간호		
	시설		
	시설관리		
	운전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의료기술		
	공업·시설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농업·수의		
	농업·운전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해양수산·시설		
	보건·약무		
	보건·간호		
	간호·보건진료		
	환경·해양수산		
	시설·방송통신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사회복지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공업·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토목운영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녹지·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토목운영		
	행정·시설·농촌지도		
	공업·환경·시설		
	농업·수의·농업연구		
	농업·보건·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세무·전산·농업		

	행정·세무·전산·녹지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수의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시설		
	행정·세무·농업·사무운영		
	행정·전산·사회복지·간호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공업·농업·토목운영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시설·운전		
	행정·공업·시설·시설관리		
	행정·공업·시설·사무운영		
	행정·공업·방송통신·시설관리		
	행정·공업·방송통신·사무운영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수의·수의연구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사무운영		
	행정·농업·시설·토목운영		

	행정·농업·시설·전문경력관		
	행정·농업·시설관리·사무운영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의료기술·간호·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운전		
7 급	소 계	4	4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행정·시설관리		
	행정·전화상담		
	행정·사무운영		
	전산·해양수산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간호		
	사회복지·시설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농업·수의		
	농업·운전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약무		
	보건·간호		
	의료기술·간호		
	간호·방재안전		
	환경·시설		
	환경·운전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지도사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환경·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간호·보건진료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농업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8 급	소 계	3	3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	1
	행정·운전		
	행정·사무운영		
	세무·운전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보건		
	공업·환경		
	공업·시설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전산		
	농업·녹지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녹지·시설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간호		
	의료기술·시설		

	간호·보건진료		
	환경·운전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공업·시설·방재안전		
	녹지·시설·방재안전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녹지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9급	소 계	1	1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방재안전		
	운전		
	토목운영		
	기계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해양수산		
	공업·시설		
	농업·녹지		
	농업·수의		
	보건·의료기술		
	간호·보건진료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전문경력관계			
나 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홍보관리원		
	투자유치관리원		
연 구 직 계			
연구관	소 계		
	농업연구관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지 도 직 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관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사		
별 정 직 계			
6급상당	소 계		
	비서요원		
정 무 직 계			
정무직	소 계		
	정 무 직		

진도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4] 〔 직속기관 〕 <개정 2026. 9 . 30.>

직급별 \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소 계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
총 계		113	66	38	15	13	47	16	13	18
일 반 직		81	66	38	15	13	15	12	2	1
전 문 경 력 관		1					1		1	
연 구 직		4					4			4
지 도 직		27					27	4	10	13
별 정 직										
정 무 직										
일 반 직 계		81	66	38	15	13	15	12	2	1
3급	소 계									
	부이사관									
4급	소 계	1	1	1						
	서기관									
	기술서기관	1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4-5급	소 계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시설사무관									
5급	소 계	5	3	1	1	1	2	1	1	
	행정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별정									
	농업·수의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2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농업·농촌지도·생활지도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환경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수의·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간호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보건·시설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별정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6급	소 계	27	22	14	4	4	5	4	1	
	행정									
	세무									
	사회복지									
	공업									
	농업	1					1	1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간호									
	시설									
	시설관리									
	운전	1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농업	2					2	2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의료기술									
	공업·시설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농업·수의									
	농업·운전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2]	[1]
	해양수산·시설									
	보건·약무									
	보건·간호									
	간호·보건진료	9	9	9						
	환경·해양수산									
	시설·방송통신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사회복지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공업·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토목운영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1	1	
	행정·녹지·환경									
	행정·녹지·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토목운영									
	행정·시설·농촌지도									
	공업·환경·시설									
	농업·수의·농업연구									
	농업·보건·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10	10	2	4	4				
	행정·세무·전산·농업									
	행정·세무·전산·녹지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수의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시설									
	행정·세무·농업·사무운영									
	행정·전산·사회복지·간호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행정·전산·공업·시설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공업·농업·토목운영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시설·운전									
	행정·공업·시설·시설관리									
	행정·공업·시설·사무운영									
	행정·공업·방송통신·시설관리									

	행정·공업·방송통신·사무운영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수의·수의연구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행정·농업·환경·시설									
	행정·농업·환경·사무운영									
	행정·농업·시설·토목운영									
	행정·농업·시설·전문경력관									
	행정·농업·시설관리·사무운영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의료기술·간호·시설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운전									
7 급	소 계	22	19	8	7	4	3	3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4	4		3	1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1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농업	2					2	2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행정·시설관리									
	행정·전화상담									
	행정·사무운영									
	전산·해양수산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간호									
	사회복지·시설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농업·수의	1					1	1		
	농업·운전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1	1	1						
	보건·약무									
	보건·간호	2	2			2				
	의료기술·간호	1	1		1					
	간호·방재안전									
	환경·시설									
	환경·운전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지도사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사회복지·보건·간호	2	2		2					
	공업·환경·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2	1					
	보건·간호·보건진료	5	5	4		1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농업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8 급	소 계	24	19	13	3	3	5	4		1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공업									
	농업	1					1	1		
	녹지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1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1					1	1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시설									
	행정·운전									
	행정·사무운영									
	세무·운전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보건									
	공업·환경									
	공업·시설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전산									
	농업·녹지									
	농업·농촌지도	1					1	1		
	녹지·환경									
	녹지·시설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간호	4	4	2		2				
	의료기술·시설									
	간호·보건진료	2	2	2						
	환경·운전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시설	1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1						
	녹지·시설·방재안전									
	보건·의료기술·간호	12	12	8	3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녹지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9급	소 계	2	2	1		1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방재안전									
	운전									
	토목운영									
	기계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해양수산									
	공업·시설									
	농업·녹지									
	농업·수의									
	보건·의료기술	2	2	1		1				
	간호·보건진료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전문경력관계		1					1		1	
나 군	소 계	1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1	
	홍보관리원									
	투자유치관리원									
연 구 직 계		4					4			4
연구관	소 계									
	농업연구관									
연구사	소 계	4					4			4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농업연구사	4					4			4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지 도 직 계		27					27	4	10	13
지도관	소 계	2					2	1		1
	농촌지도관	2					2	1		1
지도사	소 계	25					25	3	10	12
	농촌지도사	25					25	3	10	12
별 정 직 계										
6급상당	소 계									
	비서요원									
정 무 직 계										
정무직	소 계									
	정 무 직									

* [ ] 안의 수는 지도사 정원에 포함되는 복수직렬임.

진도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사업소] <개정 2026. 9 . 30.>

직급별 \ 기관별	직렬별	합 계	농수산유통 사 업 소	공원관리 사 업 소	스포츠산업 사 업 소	시설관리 사 업 소
총 계		45	12	9	12	12
일 반 직		43	11	9	12	11
전 문 경 력 관						
연 구 직		2	1			1
지 도 직						
별 정 직						
정 무 직						
일 반 직 계		43	11	9	12	11
3급	소 계					
	부이사관					
4급	소 계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4-5급	소 계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시설사무관					
5급	소 계	4	1	1	1	1
	행정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별정					
	농업·수의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농업·농촌지도·생활지도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환경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수의·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간호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보건·시설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해양수산·시설·별정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6급	소 계	13	3	3	3	4
	행정					
	세무					
	사회복지					
	공업					
	농업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간호					
	시설					
	시설관리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의료기술					
	공업·시설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농업·수의					
	농업·운전					
	농업·농업연구	1	1			
	농업·농촌지도					
	해양수산·시설					
	보건·약무					
	보건·간호					
	간호·보건진료					
	환경·해양수산					
	시설·방송통신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사회복지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공업·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토목운영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녹지·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토목운영					
	행정·시설·농촌지도					
	공업·환경·시설					
	농업·수의·농업연구					
	농업·보건·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세무·전산·농업					
	행정·세무·전산·녹지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수의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시설					
	행정·세무·농업·사무운영					
	행정·전산·사회복지·간호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공업·농업·토목운영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6			2	4

	행정·공업·시설·운전					
	행정·공업·시설·시설관리					
	행정·공업·시설·사무운영					
	행정·공업·방송통신·시설관리					
	행정·공업·방송통신·사무운영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시설	3		3		
	행정·농업·수의·수의연구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행정·농업·환경·시설					
	행정·농업·환경·사무운영					
	행정·농업·시설·토목운영					
	행정·농업·시설·전문경력관					
	행정·농업·시설관리·사무운영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의료기술·간호·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운전					
7 급	소 계	10	3	2	3	2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행정·시설관리					

	행정·전화상담					
	행정·사무운영					
	전산·해양수산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간호					
	사회복지·시설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농업·수의					
	농업·운전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약무					
	보건·간호					
	의료기술·간호					
	간호·방재안전					
	환경·시설					
	환경·운전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3	3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지도사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환경·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간호·보건진료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농업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2				2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8 급	소 계	11	3	3	3	2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시설					
	행정·운전					
	행정·사무운영					
	세무·운전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보건					
	공업·환경					
	공업·시설					
	공업·방송통신	2				2
	공업·기계운영					
	농업·전산					
	농업·녹지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녹지·시설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간호					
	의료기술·시설					
	간호·보건진료					
	환경·운전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해양수산	3	3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공업·시설·방재안전					

	녹지·시설·방재안전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농업·녹지·시설	3		3		
	행정·농업·해양수산·녹지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9급	소 계	5	1		2	2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방재안전					
	운전					
	토목운영					
	기계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해양수산					
	공업·시설					
	농업·녹지					
	농업·수의					
	보건·의료기술					
	간호·보건진료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전문경력관계						
나 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홍보관리원					
	투자유치관리원					
연 구 직 계		2	1			1
연구관	소 계					
	농업연구관					
연구사	소 계	2	1			1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농업연구사	1	1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지 도 직 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관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사					
별 정 직 계						
6급상당	소 계					
	비서요원					
정 무 직 계						
정무직	소 계					
	정 무 직					

진도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6] ［읍 면］<개정 2026. 9 . 30.>

직급별 \ 기관별	직렬별	합 계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총계		151	26	19	19	19	19	19	30
일반직		151	26	19	19	19	19	19	30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계		151	26	19	19	19	19	19	30
3급	소계								
	부이사관								
4급	소계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4-5급	소계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시설사무관								
5급	소계	6		1	1	1	1	1	1
	행정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별정								
	농업·수의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농업·농촌지도·생활지도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환경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간호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해양수산·시설·별정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6급	소 계	42	6	5	5	5	5	5	11
	행정								
	세무								
	사회복지	2			1		1		
	공업								
	농업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3							3
	해양수산(기관)								
	보건								
	간호								
	시설								
	시설관리								
	운전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의료기술								
	공업·시설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농업·수의								
	농업·운전								
	농업·농업연구								
	농업·농촌지도								
	해양수산·시설								
	보건·약무								
	보건·간호								
	간호·보건진료								
	환경·해양수산								
	시설·방송통신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사회복지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해양수산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토목운영								
	행정·농업·농촌지도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간호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토목운영								
	행정·시설·농촌지도								
	공업·환경·시설								
	농업·수의·농업연구								
	농업·보건·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세무·전산·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세무·농업·수의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세무·농업·사무운영								
	행정·전산·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전산·보건·환경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행정·전산·공업·시설	1						1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3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4		1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농업·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토목운영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운전								
	행정·공업·시설·시설관리								
	행정·공업·시설·사무운영								
	행정·공업·방송통신·시설관리								
	행정·공업·방송통신·사무운영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수의연구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3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농촌지도								
	행정·농업·환경·시설								
	행정·농업·환경·사무운영	1			1				
	행정·농업·시설·토목운영	1						1	
	행정·농업·시설·전문경력관								
	행정·농업·시설관리·사무운영								
	행정·녹지·환경·시설								
	행정·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시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3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운전								
7 급	소 계	34	8	3	4	3	4	3	9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3	1					1	1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2							2
	해양수산(기관)	2							2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3			1		1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행정·방송통신								
	행정·시설관리								
	행정·전화상담								
	행정·사무운영								
	전산·해양수산								
	전산·방송통신								
	사회복지·간호								
	사회복지·시설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농업·운전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약무								
	보건·간호	3	1		1		1		
	의료기술·간호								
	간호·방재안전								
	환경·시설								
	환경·운전	1	1						
	시설·토목운영								
	행정·세무·전산								
	행정·세무·시설								
	행정·전산·사서								
	행정·전산·시설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지도사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환경·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간호·보건진료								
	행정·전산·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4	2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농업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8 급	소 계	47	10	7	5	6	5	6	8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10	2	2	2	1	1	1	1
	사서								
	공업								
	농업	1							1
	녹지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해양수산(기관)	3							3
	보건								
	의료기술								
	간호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운전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7	2	2		1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행정·시설								
	행정·운전								
	행정·사무운영								
	세무·운전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보건								
	공업·환경								
	공업·시설								
	공업·방송통신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전산								
	농업·녹지								
	농업·농촌지도								
	녹지·환경								
	녹지·시설								
	녹지·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								
	보건·의료기술								
	보건·간호	4		1		1		1	1
	의료기술·시설								
	간호·보건진료								
	환경·운전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환경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시설·방재안전								
	녹지·시설·방재안전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7	1	1	1	1	1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녹지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5	1	1	1	1		1	
9급	소 계	21	1	3	4	4	4	4	1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9		1	1	2	2	2	1
	공업								
	농업								
	해양수산								
	해양수산(항해)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방재안전								
	운전								
	토목운영								
	기계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해양수산								
	공업·시설								
	농업·녹지								
	농업·수의								
	보건·의료기술								
	간호·보건진료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해양수산·환경·시설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행정·농업·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6	1		1	1	1	2	
전문경력관계									
나 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홍보관리원								
	투자유치관리원								
연 구 직 계									
연구관	소 계								
	농업연구관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지 도 직 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관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사								

별 정 직 계									
6급상당	소 계								
	비서요원								
정 무 직 계									
정무직	소 계								
	정 무 직								

발 령 문

진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9월 30일

진 도 군 수 이 재 [illegible]

진도군 훈령 제504호

붙임 진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규정 1부.

진도군 훈령 제504호

진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도군이 수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행인력의 관리체계와 인사·업무·복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관계 규정) ① 이 규정은 진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수행인력에게 적용한다.

② 수행인력의 업무·복무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용, 근로계약, 복무, 근로조건, 임금, 퇴직 및 그 밖의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해당 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관리 매뉴얼」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행인력”이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2. “전담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사”란 사업계획 및 업무관리 체계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가족행복과를 말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5. “근무부서”란 수행인력이 배치되어 실제로 근무하는 해당 읍·면을 말하며, 근무부서의 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 권한 및 보고체계) ① 총괄부서와 근무부서는 수행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행인력의 채용, 근로계약 및 배치
2.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의 총괄 및 근무부서 간 조정, 그 밖에 수행인력의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③ 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배정 및 수행상황 관리
2. 출퇴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무상황의 확인
3. 출장, 휴가 등 일상적인 복무사항의 확인 및 처리
4. 안전관리, 재난 대응, 교육 및 고충·갈등의 조정

④ 근무부서의 장은 업무수행 또는 복무상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행인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무 위반이나 그 밖의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행인력의 인사상 조치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제2장 채용 및 배치

제5조(채용 및 근로계약) 수행인력의 채용 및 근로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행인력의 담당 업무, 이동거리 및 근무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인력을 배치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인력의 근무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및 근태관리

제7조(복무의무) 수행인력은 「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관리 매뉴얼」 및 근로계약에 따른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수행인력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근무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① 수행인력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지각·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근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인력은 근무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 중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 또는 무단외출로 본다. 이 경우 임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참정권 행사 등) ① 수행인력의 참정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수행인력은 제1항의 시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근무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부서의 장은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행인력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비상근무) ① 총괄부서와 근무부서는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과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인력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출장) ① 총괄부서의 장 또는 근무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행인력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을 명한 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장과 출장 일정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수행인력은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출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출장을 명한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여비는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인사 및 고충관리

제13조(인사관리) ① 수행인력의 포상, 징계, 퇴직, 해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규정 및 해당 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부서의 장은 수행인력의 업무수행 및 근무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포상, 징계 등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은 해당 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4조(고충처리) ① 수행인력은 업무수행 또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하여 근무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상담하거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근무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충은 신속히 처리하고, 인사·근로관계 등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고충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와 근무부서는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전담사회복지사 8시간, 생활지원사 5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전담사회복지사는 09시부터 18시까지, 생활지원사는 09시부터 14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사회복지사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생활지원사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으로 하되, 근무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 및 휴일근로) ① 사업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근무부서의 장은 수행인력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또는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 운영상 휴일근로 등이 필요한 경우 근무일시, 사유, 대상 수행인력 및 예정 근로시간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휴가 및 휴직의 처리) ① 수행인력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근무부서의 장은 휴가 사용상황을 확인·관리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인력이 휴직하거나 그 밖에 근로관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제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을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 및 인권보호

제18조(교육) 총괄부서와 근무부서는 수행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예방교육,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총괄부서 또는 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근무부서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부서의 장은 초기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초기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세부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법령·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